

근질권설정계약서

(예·적금용, 수익권용, 유가증권용)

채권자겸

년 월 일

근질권자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인

본인확인

채무자

인

주소

근질권설정자

인

주소

제 5 조에 관하여 신탁위탁자

인

주소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에 기재된“담보제공자가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제 1 조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제 1 조 근질권의 설정

(1) 근질권설정자(이하“설정자”라 함)는 채권자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또는 가계용) 및 다음 제 1 호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그의 소유인 말미목록 기재 예금 또는 적금 등의 채권 및 유가증권 등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채권자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한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채채무를 포함함)를 담보하기로 한다.

특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20	년	월	일자	약정서
20	년	월	일자	약정서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거래, 거래

2. 담보한도액

금 [] 원

3. 근질권 결산기

(1) 채권자는 근질권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 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한다.

지정형

20 년 월 일

자동확정형

정하지 아니함.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질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한다. 다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한다.

장래지정형

정하지 아니함.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질권 결산기를 지정 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한다.

(2) 채권자에 인도한 제 1 항의 증서(통장)는 계속되는 입금, 개서, 분할, 병합, 증액, 감액 기타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자가 일시적으로 채권자로부터 빌려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받아 채권자에게 다시 제출하기로 한다.

제 2 조 담보한도액의 증액 등

채권자는 채권보전을 위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정자에게 제 1 조에서 정한 담보한도액의 증액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설정자는 곧 이에 동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한다. 다만 설정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곧 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제 3 조 근질권의 효력범위

(1) 근질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의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한 적립금을 포함함)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이자, 장려금, 배당금, 상환금과 무상주에 미친다.

(2) 설정자는, 근질권의 효력이 제 1 항에 정한 외에도 그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기간연장, 입금 또는 개서, 계속된 경우나 병합, 분할, 증액, 감액 등을 한 때에는 그 위에도 근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한다.

제 4 조 위험부담, 면책조항

- (1) 설정자는 채권자에게 인도한 담보증서(통장)가 불가항력, 사변, 재해 등 **채권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분실, 손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통장)를 제출하기로 한다.
- (2) 채권자가, 담보증서(통장), 담보물수령증 등의 증서상의 인영 또는 서명을 설정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과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증서 등과 도장 또는 서명에 관하여 위조, 변조, 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설정자가 부담하며 설정자는 증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다만,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담보목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 설정자는 그 증권에 관한 상환공고·제출공고 등에 유의하고, 이들 공고가 있는 때에는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이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채권자가 증권의 추심이나 기타의 권리행사 또는 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모두 설정자가 부담한다.

제 5 조 수익자의 변경제한

신탁수익권에 근질권설정을 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그 수익자를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제 6 조 근질권의 실행 등

- (1)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말미암아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는 근질권을 실행하거나 또는 담보목적물이 예금 등의 채권인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또는 가계용) 제 10조에 준하여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설정자를 대리하여 근질권의 목적물인 채권의 환급을 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설정자에게 통지한다.
- (2) 위 (1) 항에서 정한 외에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서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들에게 지급한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 3 취득자를 말한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 (3)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 대금
 4. 담보목적물로서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의 매각하려는 이유

제 7 조 비용 부담

채권자의 이 계약에 의한 권리의 보전이나 행사 등에 관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가 연대하여 부담하며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때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또는 가계용) 제 4조에 준하여 즉시 이를 상환한다.

제 8 조 대위권 행사

설정자는 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채권자에 앞서서 행사하지 아니하겠으며, 채권자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채권자의 다음으로 변제 받기로 한다.

제 9 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 관계

- (1) 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제공을 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설정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담보제공 또는 보증에 한도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설정계약에 의한 한도가 더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설정자가 장래 이 설정계약과 별도로 담보 또는 보증을 제공할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2)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설정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 1 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한다.

제 10 조 담보등의 변경, 해지, 해제

설정자가 동의를 하거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채무자의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 해제 등, 설정자가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채권자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 해제할 수 있기로 한다.

제 11 조 대항요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설정된 예금, 적금 또는 신탁수익권 등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설정자는 다른 은행 등의 확정일자에 의한 승낙 등 **필요한 대항요건**을 갖추기로 한다.

제 12 조 언 어

이 계약서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고, 국문본과 영문본이 상치될 경우 국문본이 우선한다.

설정자



제 13 조 특약사항

< 예금용 >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목록 :

(단위 : 원)

종별	증서기호 (번호)	명의인 수익자 (위탁자)	금액 또는 계약액 목 표 액	입금부금 누계액 또는 목적신탁	증서일자	지급기일	비고
	계좌번호						

주의 : 1. 신탁의 수익자와 위탁자가 다를 때에는 위탁자의 성명을 () 안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2. 채권자와 다른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설정된 예금, 적금 또는 신탁수익권 등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다른 은행 등의 명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유가증권용 > 담보물건목록

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1 : 수령함. 2 : 들었음)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수령하였습니까?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상담자	직위 :	성명 : 
-----	------	--

[확정일자]

담보제공자(질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취득한 예금-적금, 유가증권, 수익권 등을 점유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채무를 기일에 상환하지 않을 때에 그 담보물을 처분하여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예금-적금, 유가증권, 수익권 등에 타인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자산을 빼앗기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근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졌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세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채무범위는 다 음과 같습니다.

-특정근담보는 특정된 거래계약(예 :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한정근담보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서 정한 피담보채무 범위내에서 차주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이미 발생하여 현재 상환되지않은 채무 포함) 및 앞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되므로 그 책임이 크며 피담보채무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집니다.

○ 약정일자가 정하여진 특정한 여신거래 (예: 년 월 일자 당좌대출약정)

※ 당행 여신을 연기할 수 있으나 이를 다시 취급하거나 다른 대출로 대환 할 수 없습니다.

○ 특정한 종류의 여신거래 (예: 당좌대출거래)

※ 당행 여신을 연기하거나 다시 취급하거나 같은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 할 수 있으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 할 수는 없습니다.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경우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담보제공(질권설정)한 예금-적금, 수익권, 유가증권 등 외에 담보제공자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자의 자필서명

계약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읽으신 다음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귀하의 의사와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상 담보제공금액(채권최고금액)을 자필로 기재하시고 서명,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보계약서 사본교부

계약체결후에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면 담당직원에게 요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